

**지방세법 김윤경 해설 (D책형)**

1. ④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·기구와 비품은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이다.
2. ④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9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3. 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.
4. ①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.
5. ③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등록된 국채·지방채 또는 사채(社債)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.
6. ④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기본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「지방세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「지방세법」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.
7. ② 종합합산과세대상: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
8. ④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척기간 : 7년. 다만,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.
  - 가.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
  - 나. 「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
  - 다.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「지방세법」 제7조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
9. ② 나.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·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 : 납세고지서의 발송일
10. ④ 다음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  - 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
  - 나.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
  - 다. 판결문·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
  - 라.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
  - 마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

11. ④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·징수한다.
12. ②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료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.
13. ③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기, 계산착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또는 이의신청인·심사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.
14. ②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매도된 소매인의 영업장소재지이다.
15. ②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가. 부동산, 기계장비(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),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
  - 나.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(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)의 납세의무자
  - 다. 레저세의 납세의무자
  - 라.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
  - 마.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
  - 바. 재산세(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)의 납세의무자
  - 사.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[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(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)을 제외한다]의 납세의무자
16. ① 농기계보관용 창고를 포함하여 농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.
17. ① 판결문·법원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판결문이란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(화해·포기·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)이다.
18. ③ 지방소비세의 불복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.
19. ② 징수유예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된다.
20. ③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  - 가. 통고처분
  - 나. 고발
  - 다. 무혐의